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2두59110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윤성운, 안준규, 손승호, 황재희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호

담당변호사 조정욱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9. 1. 선고 2021누35195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 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고 한다)상 원사업자인 원고가 수급사업자인 B(이하 ‘B’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등을 위반하여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2021. 1. 2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시정명령을 하였고, 그 위반행위 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관하여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다.

2. 하도급법 적용대상에 관한 판단(원고 제1 상고이유)

원심은, 원고와 B 사이의 거래는 원고가 규격 또는 품질 등을 지정하여 원단을 주문하고 이에 따라 B이 원고가 원하는 원단을 제3자에게 위탁하여 제조·가공한 후 납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제조위탁에 해당하여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하도급법 적용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하도급대금 감액금지 위반행위에 관한 판단(피고 상고이유)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B과의 협의에 따라 이 사건 원단의 하자로 인한 손해액을 원심 판시 [표 2] 순번 7 기재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여 감액한 것이어서 그 감액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원고가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여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



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감액금지 위반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에 관한 판단(원고 제2, 3 상고이유)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이 사건 중국 원단의 하자로 말미암아 발생한 원고의 손해액이 원고가 B에 지급하여야 할 원심 판시 [표 2] 순번 10 기재 원단대금을 초과하는지 불명확한 상황에서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른 상계로 그 원단대금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그 원단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고, ②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원고의 행위가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 및 과징금납부명령의 재량권 일탈·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2-07

재판장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오석준

주 심 대법관 엄상필

 대법관 이숙연